

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(교부용)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 ~ 제2조 <생략> 제3조 (서비스 이용방법) ① <생략> ② 거래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<u>소정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</u>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. ③ 거래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의 <u>기업용 인터넷뱅킹(HanaCBS, HanaCBS Light 등, 이하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)</u>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 입금계좌, 결제계좌, 수수료지급계좌, 이메일주소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의 변경시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. ④ <생략> 제4조 ~ 제12조 <생략> 제13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은행은 MP 또는 거래기업이 <u>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</u>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제14조 ~ 제17조 <생략></p>	<p>제1조 ~ 제2조 <좌동> 제3조 (서비스 이용방법) ① <좌동> ② 거래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<u>에서 정한 인증서</u>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. ③ 거래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의 <u>기업용 인터넷뱅킹<삭제>이하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)</u>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 입금계좌, 결제계좌, 수수료지급계좌, 이메일주소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의 변경시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. ④ <좌동> 제4조 ~ 제12조 <좌동> 제13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은행은 MP 또는 거래기업이 <u>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유효한 인증서</u>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제14조 ~ 제17조 <좌동>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 <p>- 용어변경 반영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2월 21일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